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1일(화)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44)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7)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38)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16)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32)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21)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82)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55)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87)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840)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723)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991)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006)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897)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9520)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027)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449)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803)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상정된 안건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44) 5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7) 5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38) 5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16) 5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32) 5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21) 5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82) 5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55) 5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87) 5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840) 5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723) 5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991) 5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006)	5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897)	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9520)	5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027)	6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449)	6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803)	6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6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6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6

(10시15분 개의)

○소위원장 서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2소위원회는 국가보훈부·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만하고 효율적으
로 소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
립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부터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오늘 정기국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보니까 정무위가 모범적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해서 정말 앞으로도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서일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 제가 위원장님 잘 모시고 박대출 선배님 잘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저희만 너무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다들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위에서, 예결소위에서 이미 한번 경험이 있기는 한데 법안 소위 또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뵈게 돼서 반갑고요. 자주 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있으면 자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공정위·권익위, 정말 중요한 부서를 두고 있는데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여야가 다른 것은 떠나서 민생법안은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간사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민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되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그리고 한창민 위원님, 정말 민생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가면 여야 간의 큰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서일준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혁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또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요 우리가 소위에서 품격 있는 심사 활동 또 내실을 갖춘 그런 심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8건의 법률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7)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8)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6)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2)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1)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2)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5)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7)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0)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3)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1)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6)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7)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0)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027)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449)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803)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10시20분)

○소위원장 서일준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현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적정 단축기간입니다.

현행법에는 특약매입 등에 대해서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의 경우에는 상
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인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약매입인 경우 10일~30일 이내, 직매입
의 경우 7일~40일 이내로 단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차등 적용 여부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납품업체 규모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경우 중소기업 등
에 차등 적용, 단축하자는 안이고요. 상품 특성에 따라서도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5일 또는 1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자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직매입 거래의 예외입니다.

일정 기간 거래된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의 종료일을 기준
으로 지급기한을 산정하자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 규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 규정을 두자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지연이자 상한 상향입니다.

현행 연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을 개정안에서는 연 50% 이내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신설은 현재 현행법에서는 지급기한의 위반 시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정 단축기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물 거래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3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경우 현재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상품수령일부터 7일~4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납품업자 등의 자금 운용 및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기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지연이자의 지급이나 시정명령,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바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소요기간, 과도한 단축 시 납품업체에 유리한 직매입 거래가 위축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단축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정위의 대금 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소요기간은 특약매입 거래가 23.2일, 위수탁 거래가 21.3일, 임대물 거래 20.4일, 직매입 거래 27.8일입니다.

다음, 9쪽 관련 업계 의견입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경우 특약매입 등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50일, 4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경우에는 정산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지급기한 단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백화점협회의 경우에는 특약매입의 경우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기간을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관련해서 저희는 현행 대금 지급기한 단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약매입의 경우에는 20일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직매입의 경우에는 30일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업계 평균 소요 일수 그리고 업계에서의 실무상 정산에 필요한 소요 일수 등을 감안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이 법을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위 부위원장님, 그 직접적 계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떤 계기였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대금 지급기한이 길어지면서 납품업체들의 유동성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유통업체가 도산이나 파산이 났을 때 그런 리스크를 유통업체들이 지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최근에 어떤 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티메프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박상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 티메프 사태 때 동료 의원님들이 현안질의를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유통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 유통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통이라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과 현재의 온라인 중심으로 다 바뀌어 온 상황에서 이렇게 대금 정산기일이 길었고, 그때도 사실 티메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긴 정산기일을 갖고 물건을 제공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돈처럼 돌리고 이자를 만들고 하면서 그런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하였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페이로 돈을 지급하고 또 우리가 향후에 정무위에서 논의하게 될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정산이라는 개념이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새로운 숙제를 남기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자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평균적인 관행을 두고서 정부에서도 20~30일 정도의 안을 내온 건데 대체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 일차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규모유통업자들, 특히 온라인 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공정위에서도 서서히, 문제가 터지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준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최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 부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을 보면 지금 현행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대규모유통업이라고 하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예를 들면 각 업종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데이터는 좀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법상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최은석 위원 전체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금 한 160개 정도……

○최은석 위원 160개.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할인점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현금, 자체 운영자금 같은 게 좀 넉넉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온라인이나 인터넷 쪽에는 일부 기업 말고는 아직도 적자 상태에 빠진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유통업체의 영업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 이런 것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까 박상혁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값을 사업자 간의 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단축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 대규모유통업법은 물론이고 사실 티메프와 같은 인터넷중개거래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추가적으로 담겨서 그 논의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도급법 같은 경우도 대금 기한 단축 논의를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제시해 드린 이 기간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하고 실태조사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업계가 현재 평균으로 가고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수용성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하면서 마련한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업계 중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네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업계는 기본적으로 단축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인 것은……

○최은석 위원 그런데 온라인쇼핑협회나 백화점협회는 어느 정도 수용가능성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반대한다……

160개 중에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인터넷 업체 숫자는, 큰 업체들이라서 사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쿠팡이나 쉑리나 이런 업체들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대규모유통업법뿐 아니라 향후 논의될 온라인 중개거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사실 규모가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은석 위원 다른 입장을 같이 감안한 그런 의견일 수도 있긴 한데 인터넷 기업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결제기한이 단축되게 되면 혹시 업황이 더 어려워져서 거기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좀 더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의견을, 정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의 오픈마켓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온플법 이슈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고려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인터넷기업협회에 속한, 네이버 쇼핑몰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터넷기업협회라는 데를 저도 최근에 만나 봤습니다만 사실상 그냥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내는 곳이지, 네이버 쇼핑몰 이런 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네이버 쇼핑처럼 중개거래하는 업체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인터넷기업협회에 대규모유통사업자와 관련된 업체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금 보니까 1000억 이상 유통업법 적용받는 업체가 대략 50개 업체인데요. 쿠팡이나 SSG닷컴, 카카오 선물하기, 쉼리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최은석 위원 방금 50개라고 하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최은석 위원 160개 중에 50개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인 것으로 보여집니까?

○박대출 위원 1000억 기준으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중복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중복돼 있는 것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박상혁 위원 여기 대규모유통업자로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잘나가는 기업들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문제가 있는……

○김용만 위원 부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께 상반기에 정무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들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그들이 결국은 납품대금이라는 것을 천천히 주면서 이자놀이를 하는, 그러니까 돈을 갖고 놀 수 있는 여유가 있던 사람들, 정작 납품을 하는 사람들은 피가 말라 가지고서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하여금 정산하는 주기를 줄이자라는 것 때문에 강민국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아주 강하게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시면 조금 더, 아마도 지금 처음 들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협회 쪽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챙겨 주셔야만 하는 생각을 하신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부위원장님께서, 공정위 쪽에서 이것 끝난 이후라도 인지를 시켜 드릴 수 있게 보고를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부위원장님, 7페이지에 실태조사하신 것 있잖아요, 대금 지급 관련해서 서면 실태조사. 10일 이하 비율도 있습니다, 특약매입 거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여기하고 다수가 10일 초과~20일, 20일 초과~30일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일 이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들은 내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알아 보셨어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업체마다 선택적으로…… 그런데 이게 60일이나 40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주라는 게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업계 사정에 따라서 정해서 주는 거니까요.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될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고 지적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의 위치에서 대금을 가지고 을에 있는 납품업체들을 향해서 그런 식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좀 공정위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티메프 사태 때 오픈마켓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정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대금은 사실 유통업체가 보유한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매한 업체한테, 결국은 납품한 업체한테 가야 될 돈인데 중간에 킵을 하면서 금융이익을 얻는 그런 성격과 동일한데 사실은 업체마다 적극성이 달라서 빨리 주려는 업체도 있고 굉장히 장기간 보유하면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때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조금 빠른 정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알 만한 업체도 사실 생각보다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일이 소요가 돼서 또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투자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민수 위원** 투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과방위에 있을 때도 대규모 정보 침해, 해킹 사태들이 있으면 굴지의 대기업들도 투자 제대로 안 한 게 드러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맞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것을 공정위가 이끌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에 의율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들이나 업체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담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의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 그대로 투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납품업체에다가 대금 지급도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참고로 한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반성장협약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갑을 간에 일정한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대금 기한을 짧게 가지고 가려는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배점이나 가점을 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상의 상한대로, 상한이 있지만 그 밑으로 낮추는 유인들은 계속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그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이 문제는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좀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는 납품대금을 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가 받는 것 이것은 일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기준은. 그러나 현실 가능한 짧은 선이 어디에 있느냐, 업종별로 짧은 기준이 다 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치로 며칠 이내 이러는 게 과연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이런 거지요. 유통업체가 단순히 100% 유통만 하는 거냐 아니면 일차적인 물량을 받아서 그것을 소화하는 기간이 업종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해 버린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건데 재고량이나 반품량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엄밀히 되어 있느냐. 수박하고 양말하고 파는 기간, 판매대금, 회수기간이 같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공정하고.

그다음에 판매수익을 유통업체가 회수하는 기간, 거기에 따른 차이점. 이를 테면 유통업체가 농산물을 팔았는데 그 유통업체가 팔아 가지고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 한 달, 두 달 대금을 안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말이나 내의나 이런 의류를 절반은 1개월에 팔렸고 절반은 6개월 동안, 겨울이 돼서 나머지를 팔았다. 그런데 그 대금을 한 달 내에 다 받아야 된다, 40일 내에 받아야 된다 이것도 불합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물량이 100% 다 된다면 그게 관계가 없는데, 그 차이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유통만 한다 그러면 그 차이는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반품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유통업체들의 애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주로 특약매입이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매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품 문제가 생기는 불공정행위가 있고요.

○박대출 위원 그러면 재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다음에 재고는 사실 직매입의 경우에는 재고 부담을 유통업체가 지게 됩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래서 말씀하신 재고나 반품 이런 것들을 고려한 특약매입이나 직매입 실태를 보면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박대출 위원 이 재고의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로서는 재고의 부담이 적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많고 배수가 많고 업종별로 제품이 다양해 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유통업체의 부담도 외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축하는 기간의 적정성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런 점을 나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당기기로 했다는 것은.

○이강일 위원 박 위원님이 드린 의견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용만 위원 아니, 그 내용도 있기도 하고요.

○이강일 위원 있기도 하긴 한데 지금 주체적인 것은 판매가 됐을 때의 정산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 아니, 판매금액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납품업체는 판매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납품한 기준이지요. 재고량이 계산이 안 된 거지요.

○이강일 위원 그건 직매입했을 때 얘기……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직매입도 마찬가지로, 직매입도 유통업체로서는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것은 부담이라고, 그건 경영 부담이 크게 갈 수가 있다고,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 거래 방식은 어쨌든 유통업체가 직매입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박대출 위원 직매입했으니까 직매입한 유통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은 맞는데 그러나 그게 기간이 너무 단축되면 경영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김용만 위원 박대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답변 한번 들어 보지요.

○김용만 위원 산업을 나누지 않았던 것 때문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 이강일 위원님도 결국은 제 생각에 같은 맥락인 건데 우리가 특정 산업, 그러니까 정산 대금기간이 각각의 산업별로 성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 성향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성향들을 산업별로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요일을 평균을 냈을 때 직매입 같은 경우는 27일인 거고 의류 같은 경우는 21일인 거고, 그렇게 해서 30일, 20일로 지정했다 그 얘기를 제 생각에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소위원장 서일준 박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지금 대규모유통업에서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팔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직매입해서 보관하면서 파는 방식인 겁니다. 그것은 직매입 방식인 거고 그게 아니고 누군가 물건을 입점시켜서 판매했을 때는 판매시점을 결제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이 두 가지가 혼동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논의가 되기 전에 앞에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이게 전반기 때 계속 다루어졌던 문제잖아요. 스토리가 조금 있는 문제라서 정확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가 결정적으로 티메프 사태가 딱 터지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주기에 대한 부분을 주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거고, 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업체에 적용했을 때 납품업을 많이 하면서 이 정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물건을 파는 거냐, 그러면 그것 누구의 돈이냐. 그런데 그 주인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판매를 대행한 업체가 그 돈을 상당 기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제대로 활용을 해서 납품업체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혜택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경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그 피해가 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납품업체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문제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걸

위탁받은, 솔직히 말해서 판매를 대행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물건 판매를 대행해 준 업체일 뿐이거든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물건에 대한 재산권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생했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들이 굉장히 많이, 십수 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의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납품업체의 돈이지 유통업체의 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다 동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정산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 가려고 하는 데는 이 시스템을 갑자기 바꿨을 때 지금까지 하던 업체들한테 피해를 흡수할 수 있거나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여기 관련 업계 의견이라고 올려 놓았잖아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는 솔직히 말해서 대형유통업, 갑의 입장에 있는 업체들의 의견만 넣은 거고 여기에 곱하기 천, 곱하기 만에 있는 피해 업체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김용만 위원** 다 얘기 안 해도, 그 배경을 다 얘기하려면……

○**이강일 위원** 아니, 배경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정산 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는 물건이 대형유통업과 관련되는데 돈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쥐 가지고 그걸 입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다 하루 내에 모든 게 들어오고 나가고 판매된 금액이 딱딱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 기간을 늦춰 줄 하등의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렇게 늦춰 줄 이유가 많이 없다고. 우리가 전체적인 업계의 평균을 얘기하는데 평균으로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당겨 주는 업체들은 다 바보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최대한으로 당겨 줄 수 있었다는 부분은 당겨 주는 것도 시스템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장으로 해서 며칠며칠 하고 특별하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시스템이 낭비 요소가 있다는 사전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완비되는 상태까지 당기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것은 좀 타당한 것 같아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상품 수령일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고 했던 부분은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실시했다가는, 60일로 했던 업체가 갑자기 열흘로 당겼다 하면 50일 동안 자기들이 운용했던 자금을 갑자기 어디서 획득을 하거나 어디서 차입을 하거나 융통을 하거나 자본금을 충획(充劃)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이것은 단축 기간을 대폭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대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박대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를 테면 이런 거지요, 유통업체가 80만 원어치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걸 1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100만

원 팔면 20만 원 자기 수익 마진 중에서 경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면 되는데 50만 원어치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50만 원밖에 못 줄 형편인데 80만 원 줘야 되면 30만 원 손해 보고 적자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50만 원이라는 돈을 판 것만 주게 되면 납품업체가 자기는 80만 원어치 납품을 했는데 30만 원 못 받고 있는 거고. 이 중간의 괴리, 이에 대한 계산이 업종 하나만 따지더라도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백수천 가지를 물량을, 대규모 업체들이 수만 가지를 다루게 되면 거기 차이를 어떻게 계산이 나올 것이냐, 걱정선을 어떻게 찾을지 이게 지금 대단히 궁금하다라는 거지요.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유통업체가 20만 원 유통마진으로 먹고 80만 원만 납품업체한테 주면 되는데 100만 원어치 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 중간의 갭을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통계나 자료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그런 직매입 거래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은 유통업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당연하지요, 져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리고 그것은 아마 납품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당연한 건데 그게 쌓이게 되면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그 하나의 물량만의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장사를 해 봐도 재고라는 게 많습시다. 그걸 그 회사의 문제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돼요. 쌀 장사, 담배 장사 외에는 다 유통이 있어요, 재고가 있는 거라고.

○**김용만 위원** 이것은 B2B 안에 계약 형태에 있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아니, 계약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김용만 위원**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유통업체가 부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측면에서, 자율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풀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가장 최소한의 룰을 정하는 거여서……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최소한을 찾는 건데 그것은 유통업체……

○**김용만 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 얘기를 자꾸 반박을 하니까 그런데 유통업체의 책임이라는 선으로 지금 문제를 자꾸 단순화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반박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서일준**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박대출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아니,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측의 의견을 여쭙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한창민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까 이강일 위원님 질문에 답을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강일 위원** 예.

○**소위원장 서일준** 예.

○이강일 위원 저 답변 듣고 싶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중기중앙회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갑 사업자만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중기중앙회가 수탁업체 대상으로 적정 대금 지급기한을 물어봤을 때 한 60.6%가 30일이 적정하다고 이런 답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축의 경우에, 특약매입 같은 경우는 월말에 마감이 되면 부가세법상 10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10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행정처리가 살펴보니 그게 한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가 되는, 그 정도 고려해서 저희가 20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 20일이 어떤 게 20일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세금계산서 발급……

○이강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일이라고 했으니까, 20일이라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 특약매입입니다.

○이강일 위원 저도 주장하는 게 20일인데?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지금 이야기들이 조금씩 섞여 가지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까 시스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다가 세금계산서 이야기로 나왔다가, 혼란스럽거든요.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고 최대한 이 문제가, 납품업자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 잘못된 규제를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시스템 문제입니까 아니면 행정처리의 문제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줄이지 못 한다는 게 저희가……

○김용만 위원 더 줄이지 못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한창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돈을 아끼려고 안 한다, 투자를 안 해 가지고 그런다, 이게 주 요인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보완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나 행정적 상황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줄일 수 없다 이 이유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정확하게 실태 파악됐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규제를 설계할 때는, 저희 나름 대부분 규제는…… 여기서는 규제의 목적이 납품업체들의 대금 수입 적정성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높여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 규제를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규제에 따른 비용 측면도 함께 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함께 고려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정말로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 가지고 개선이 안 된다는 류예요? 얼마나 들어가길래? 지금 개선을 해 가지고 빠르게 지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회사의 이익 차원에서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겁니까, 시스템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사실은 기한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답은

어떻게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60일·40일로 갔던 기일을 30일·20일로 단축을 하면 어쨌든 상당히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일정한 조정 비용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게 100%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한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도 이게 단축을 해 가지고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하자 이 말씀이시고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저희들은 기준선을 빠르게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실 소비자들, 이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의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실태 파악을 했고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래 관행이 잘못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서 최대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일준** 최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박성훈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다들 공감하시는 것은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하고 또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늦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납품업체들에 조금 더 근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걸 줄이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무작정 많이 줄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도 옛날에 기업에서의 경험을 보면 반품이라든지 또는 마감이라고 하는, 어떤 계약에 따라서—대부분 월 마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월 마감하고 그 회사와 서로 정산을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될 금액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무작정 줄이기는 어렵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다음에 지금 온라인 유통회사들 중에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최근에 쿠팡이 분기도 아니라고 하지만 쿠팡 정도 말고는 적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적자 회사들이 많아서 이것도 무작정 많이 줄이게 되면 유통업체들의 선순환이라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소기업체들의 물건을 팔아 주고 대신에 유통업체들은 시스템에 투자하고 초기에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투자들도 있는 거라 유통업체들도 나름대로 필요한 현금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결국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법안이 지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여 가되 아까 업계의 여러 가지 정산과 세금계산서 교부라고 하는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쿠팡이나 일부 아주 대형 온라인 업체들 말고는 지금도 실은 마켓컬리라는 데도 다 적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내부의 운전자본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납품업체들의 물건을 좀 더 많이 팔아 주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정 규모로 줄이는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의원님들 안하고……

그런데 공정위가 60일을 30일로, 40일을 20일로 한 것들을 보면 업계의 평균이고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것들 보면 30일이 60.6%인데

그걸 넘어가는 것도 20%가 넘거든요. 아마 이런 개별회사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정부안보다는, 60일·40일보다는 많이 좀 줄이되, 의미 있게 줄이되 정부안이 약간 평균이나 제일 많은 걸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어려운 유통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이에서 조금 절충해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다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근본적으로 납품대금, 참 이것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공정위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했는지 여쭙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기한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전자금으로 자금운용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거나 여러 가지 기업 운영에 활용을 해왔던 대규모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비용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업체가 전반적으로 납품업체와 관계를 봤을 때 갑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을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판촉 비용을 전가시킨다든지 신규 납품업체를 아예 그냥 축소해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번져 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법정기한하고 실제 지급 관행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행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업종별로도 분명히 나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업체의 규모나 거래의 유형별로도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작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차등적 단축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기 지급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거래 유형별 그리고 업체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서 좀 세분화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좀 더 정치하게 하시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률적 단축보다는 단계적·차등적 단축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다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 사안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유통업체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납품업체 쪽의 양쪽 상황을 다 같이 잘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법안으로 하여금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산업으로 나뉘 볼 것이냐 혹은 업체의 규모별 나뉘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나뉘게 됐을 때 그러면 각각의 적용되는 시점에 있어서도 불균형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결국은 지금 납품업체 쪽에서는 너무 자금난에 시달리고 유통업체 쪽에서는 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장사를, 이자 놀이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에서 그 중간값을 찾다 보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개의 유형인데 직매입 같은 경우는 27.8일이라서 30일로 그리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율은 각각 23일, 21일, 20일이니까 20일로 이렇게 정한 거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결국은 법으로 하여금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은 항상 최소한이어야 하기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공정위 내부 이 사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셨던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본 거고요.

얘기를 하신 것처럼 더 일찌감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도 30일과 20일이라고 안전하게 줄여 나간 이 기준을 더 줄여 줄 수 있는지까지도 공정위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 기준이 오랫동안 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름 가장 적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안으로 30일, 20일을 제안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우려점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걸로 하여금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같은 것들도, 물론 아무래도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몸집이 큰 곳들이 대체적으로 많으니까 부작용이 덜할 수 있겠다마는 그렇다고 간과할 지점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님.

○박상혁 위원 몇 가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약간 논의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산기한의 대상이 모든 유통업체입니까, 대규모유통사업자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대규모유통사업자입니다.

○박상혁 위원 몇 개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60개 정도 됩니다.

○박상혁 위원 160개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쿠팡이나 이런 데도 대규모유통사업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쿠팡은 들어갑니다.

○박상혁 위원 쿠팡만 들어갑니까? 어디가 또 들어갑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쿠팡하고 예컨대 쓱닷컴이나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온라인 쪽은 그렇고요.

○박상혁 위원 온라인은 그렇고 나머지는 주로 백화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이런……

○박상혁 위원 상대적으로 다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여유가 있고 그동안 물품 거래를 늦게 지급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이번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아주 오랫동안, 예전에 납품업자들에게 늦게 금액 제시를 해 가지고 MBC 또는 KBS 이런 데서 단골손님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그런 관행들인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실태조사 때 보니까 주로……

○박상혁 위원 지금 7페이지에 있는 유통업체별 여기서는 대규모유통사업자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통사업자 전체를 하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대규모유통업체입니다.

○박상혁 위원 이 대금 정산기한이 168개 업체에 관련된 대금 평균 현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법 적용대상 되는 유통업체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혁 위원 법적인 대상들.

위원님들이 생각들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규모의 유통사업자들이라든지 또 유통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업자들의 이익과 또 유통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서……

현행도 지금과 같이 산업별 또 업종별 이런 것이 없지요, 60일, 40일 규정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따로 산업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요.

○박상혁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된…… 또 어떤 일부 개정안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품업자들은 좀 먼저 해 주자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신선식품에 관련되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신선식품은 일차적으로 농민들이 납품하기보다는 대규모, 대기업의 유통회사가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고려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낱씨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그런 평균적인 것과 업체의 관행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게 지금 부칙으로 시행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년입니다.

○박상혁 위원 1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계가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된 거라서 위원장님께서 이제는 토론을 정리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공정위가 소위 할 동안에 답변이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다 일치된 의견은 하여튼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줄여야 된다, 최대한 빨리 납품업체에 판매수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데서 일치된 의견인데, 그 적정성을 묻는데 적정성의 근거를 지금 제시를 못 해요.

지금 이렇게 해 놓았어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실 수용 가능성을 보니까 이 정도가 적절하더라.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직대금의 경우에는 30을 했냐, 중소기업 업체들의 60%가 넘게 30일로 하더라. 이분들은 30이 아니라 그냥 당일 날 바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 아니예요? 이런 납품업체의 의견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분석해 보니까 30일이면 충분하더라. 직접 유통구조나 아니면 대규모유통업체에 가서 유통구조하고 판매수익, 거기에 납품부터 판매, 배송, 반품 그리고 판매대금 회수까지 그 과정을 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진中间的 갭의 기간 동안에 이자 놀이를 해서 얼마나 얻고 그래서 총수익을 얼마를 얻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라는 그런 분석은 주셔야지요. 공정위가 주먹구구 하듯이 60일에서 50일, 무슨 납품대가 후려치듯이 기간도 후려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왔구나, 참 고민 많이 했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 주는 게 좋겠구나 그런 느낌은 받게 해 줘야 제가 이 수치를 계산하지 갑자기 60을 40으로 낮추고 3분의 2로 줄이고, 왜 줄였는지, 얼마큼 줄였는지, 그 수치가 정당한지 그것 합리적으로 수궁이 갈 만한 답변은 주셔야지요. 답변을 하나도 못 해요, 지금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매입이나 대량매입 또 위수탁, 임대을 이게 크게 유통·거래 방식인데 방식별로 대금지급 절차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평균 기일은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일들을 평균을 내고 각 소요 일수를 본 거고요. 또 수급사업자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 봤고요. 그런 측면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절충안 말씀……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줄이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공정위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 충격에 대해서는 공부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정위의 안과 지금 현행상의 적정선에서 한 중간점 정도에서 절충을 찾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이강일 위원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중기중앙회의 수탁업체 대상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지급기한 조사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현행 60일인 걸 알려 줬고요. 1번이 15일이고 2번이 30일이고 35일, 40일, 45일, 50일 이렇게 해 가지고 30일에 제일 많이 찍었다고 그래서 이게 평균이 30일이라는 게 말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이것은 저희가 평균을 얘기한 게……

○이강일 위원 아니, 그러면 0일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이것은 저희가 평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수탁업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답변을……

○이강일 위원 15일, 30일 이 경우에서 30일이라고 찍은 게 제일 많다는 얘기지. 그 전에 도트를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나온 게 30일이라고 확정적으로 60%가 찍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이것은 저희가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중기중앙회가 수탁업체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많았다는 거지……

○이강일 위원 그러니까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한 게 이 기법이 맞을 것 같냐고요. 그래서 30일 평균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는 얘기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30일 평균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강일 위원 여기에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조사가 또 있어요, 여기 나온 것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것은 실태조사를 따로 공정위가 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됐어요? 여론조사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사 문항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유통업체들한테 다 자료를 받았습시다.

○이강일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30일이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지금 현재 대금 지급기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사한 겁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거래 방식별로.

○이강일 위원 그것은 업체의 지금 납품기간이 얼마냐를 조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때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30일이라고 체크한 게 60.6%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것은 중기중앙회에서 따로 수급업체들 얘기를 들어 본 거고요.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실태조사 결과의 평균을 낸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는 따로……

○이강일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들이 30일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 말씀……

○김용만 위원 실태조사를 했더니까.

○이강일 위원 실태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니까.

용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줘……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여기 쟁점이 보니까 걱정기한 단축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하든 하고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빨리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성훈 위원님.

○김용만 위원 저도 아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강일 위원 내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1시간 15분 정도 충분하게 토론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한이고 기한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부작용은 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정위에서도 답변이 나온 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이 그냥 자기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아서, 하여튼 한 두세 분만 더 말씀 듣고……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얘기하려 했는데 끊겼어요. 그것 얘기를……

○소위원장 서일준 계속하시겠습니까?

○이강일 위원 예, 그것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서일준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제가 작년에 입법을, 재작년서부터 얘기를 하고 입법을 할 때 분명히 애기한 것은 대형유통업체들도 충격을 흡수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얘기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라고 애기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그쪽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요 어차피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업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폭탄이 더 크게 터질 뿐이지 적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요 어디까지 줄일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원칙은 분명해요. 그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스템상에서 용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기간까지만 늦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김용만 위원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김용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부원장님, 지금 박상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사한 업종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정산 주기를.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유사한 업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대규모들, 큰 업체들, 그러니까 여력이 있고 더 빨리 정산해 줄 수 있는 집합체인 거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도 사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에

동이가 되는데, 직매입 27.8일 그리고 또 다른 특약매입과 위수탁, 임대율 23.2일, 21.3일, 20.4일 이 평균치를, 과학적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지금 여기에 제시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강일 위원님께서도……

결국은 중기중앙회에서 돌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직접 실제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낸 평균이 이것인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이 내용을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요청을 드려 가지고 공정위 내에서 지금 이 수치를 갖고 제시할 수 있게끔 된 내용들,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 내용을 의결하더라도 지금 그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야당, 여당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게 지금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규모의 업종들이 평균적으로 좌우가 심하게 나뉘지 않는 평균치가 이거라서 이것 정도에서는 제법 몸집이 있는 업체들이니까 소화가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돈놀이를 하다가 지금 이런 사회적 문제가 크게 터져서 결국은 법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 평균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다음에 박성훈 간사님 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저는 공정위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자료도 만들지 않는 그런 기관인 줄 몰랐습니다. 정무위 와서 공정위 자료를 처음 들여다보는데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당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준거나 판단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대충 이렇게 합시다, 며칠 합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납품업체나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어떤 기관이 가장 적절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셨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채고 회전율은 어떻고 또는 판매대금 회수 기간은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볼 때 현금 흐름이 불일치되지 않도록 이 기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종별 분업을 충분히 나눠서 조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로 현금 흐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결국 판매이전의 대금을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돈이란 결국 자기 자금 아니면 차입금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위가 정당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PG사 그다음에 정산하기 위해서 플랫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또 농축산수산물처럼 정말로 신선유통이 필요한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뭉뚱그려 가지고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일 현황 또 중기중앙회 실시 설문조사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대금 지급 기한을 적정히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가 자료를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박상혁 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부위원장님 말고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상황들에 대해 혹시……

○소위원장 서일준 담당 국장님이 없습니까?

○박상혁 위원 잠시 후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다른 쟁점들을, 조금 세부적인 쟁점도 있을 거고……

○박대출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할……

○소위원장 서일준 예, 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석 자료나 업계의 현황 자료가 있으신 분 계세요?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1번 직매입 60일 특약 30일, 2번 직매입 90일 특약 15일 이렇게 했을 때 납품업체나 유통업체가 답변이 똑같이 나오니까, 아니면 극 업종별로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1번을 선호할까요, 2번을 선호할까요? 답변 혹시 지금 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유통업체별로 예컨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다 주로 하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약매입 방식을 주로 하고 그리고 쿠팡 같은 몇몇 경우는 직매입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선호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게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차등……

○박대출 위원 지금 백화점이 선호한다는 방식은 백화점은 갑의 입장에서고 납품업체 입장에서 1이 좋을까 2가 좋을까도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지금 바로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분석한 자료를 좀 쫓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시간 20분 동안 이 법안 같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쟁의 부분이 아니고 정 말 민생에 관련한 부분이니깐 많이 토론하면 토론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줄이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마치고……

오늘 또 정기국회 첫 개회식이 2시지요?

○박상혁 위원 예.

○소위원장 서일준 2시, 마치고 3시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위 부위원장님, 이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 빼고 60개인가 여기에 매출액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나눠 주시고,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준비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매출액 분포를 지금 정회시간에 준비를 하시는데, 바로 안 되더라도 대략적인 분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3000억 단위로 끊어서든지,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인데 1000억에서 4000억 구간, 5000억 구간이 있는 거고 1000억~3000억 구간이 있든……

그다음에 조금 전 정회시간에 말씀 나눠 본 바로는 2조 이상 대규모 유통사업자도 1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1조……

○박상혁 위원 예.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느 정도 분포를 해서 대규모 유통사업자들이 어떤 정도의 분포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방금 간사님 말씀처럼 분포도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충분히 여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정위 부위원장님, 설명을 꼭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정회시간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 배포가……

○소위원장 서일준 이 두 장짜리 말씀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첨부자료 2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오전시간에 저희가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들 추가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오전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문제 주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은 1000억 원 이상 유통업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라 총 13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등 이런 큰 규모의 업체가 되는 거고요. 1000억 미만 매출 중소기업체는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업체로서는 쿠팡, 무신사, 쿠팡, 올리브영, 카카오 같은 회사가 해당되고요. 보통 중개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옥션, G마켓, 네이버쇼핑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법 개정안에 반영한 실태조사는 첫 번째 네모에 있는 공정위가 11개 업태 132개 전체 유통업체 대상으로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해 25년 상반기에 조사를 실시한 그 실태조사이고요. 오전 설명 중에 나왔던 중기중앙회는 이와 별도로 수탁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정 지급기일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11개 업체 대상으로 실제 대금지급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급에 며칠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직매입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유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채고부담이 유통업체에게 있는 건데요. 이거는 주로 발주, 입고, 검수 그다음에 매입처리 및 매입마감 그리고 유통업체 세금계산서 승인 요청, 납품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유통업체 내부 지급 행정처리와 대금지급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111개 업체 모두 자료를 받아서 이게 며칠 걸리는지 각각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평균 27.8일인 거고요. 거기서 한 60% 업체들이 30일 이내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매입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 기준 30일로 설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약매입 같은 경우는 한 달 간 물건 판매를 하면 월말 판매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유통업체 내부 지급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서 대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한 50% 내외 업체들이 2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었고 월말 판매마감 시점으로는 최소한 16일의 정산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약매입 등의 경우에는 판매마감일 기준 한 20일로 설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됐을 때에 업계에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몇 가지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1년 후에 적용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칙에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직매입의 경우에는 월정산 관행들이 있어서 이런 월정산 관행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서 월 1회 정산 시에는 특약매입과 같이 월마감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예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납품업체 연락 두절이나 파산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이 유통업체 책임으로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내용을 또 시행령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법상 한도를 정한 것이어서 이보다 더 실제 대금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동반성장지수와 유통협약평가에서 대금지급기한을 평가항목으로 지금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했던 게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의 지금 경영 상태, 적자 회사가 몇 군데나 되고 어떤 기업들이 현재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지 이 실태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상적인 이 설명자료를 보면 직매입은 60% 업체들이 30일 이내 지급하고 특약매입은 절반 안팎이나 20일 내 지급해서 통상적으로는 다 30일 이내 또 20일 이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해당 안 되는 기업들이 어떤 현상을 만드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보도자료 2개에 대해서 공정위 측에서 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는데 정산 주기를 20% 줄이면 중소 납품사 30%가 퇴출 위기 온다라는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연구분석 자료 결과 내용, 또 같은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정산 주기를 60일에서 20일 줄이면 연 21조의 피해가, 결국 직격탄이, 피해가 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면 어떤 이유로 근거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 신중히 이 문제를 봐야 되냐면 이 내용들이 결국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논의를 하는 취지가?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결국은 납품업체한테 피해가 전가돼 가지고 더 피해가 커지는 결과로 와 버린다.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것은 곤란해지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적자 기업이나 현재 기업들의 실태를 봐야 될 문제들이 어쨌든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 수준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겨우 수지를 맞추거나 아니면 지금 수지를 못 맞춰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업체들은 오히려 경영 악화를 더 부채질하는 법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기업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더 영세하고 좀 더 규모가 적을수록 그런 피해 기업들이 많고 대규모일수록 피해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게 유통업체도 피해가 오고 납품업체도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된다면 이것도 곤란해질 거라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지금 엄밀하게 분석이 안 돼 가지고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부위원장님, 정산 주기 단축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위 차원에서 납품업체

나 입점 소상공인 또는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 결과가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 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실태조사한 자료는 보여 드렸는데……

○**박성훈 위원**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교차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링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처럼 정산 주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정산 주기를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1년 뒤에 약 74%의 중소 납품업체만 생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중 30%의 중소 납품업체는 도태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도태된 중소기업 피해액은 연간 최대 21조 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늘어난 대형 유통업체의 자금 또는 채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발주량 축소로 유통업체들은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에는 납품대금은 빨리 받지만 결과적으로 주문 자체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조기 정산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있고요. 정산 기간 단축 이익보다 매출 감소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하면 이 제도의 취지처럼 중소 납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그 큰 뜻은 관철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량을 축소한다든지 안전 재고를 축소한다든지 인기 상품 위주로 소량으로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소 또 신규로 납품하겠다는 업체는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오히려 이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산 기간 단축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다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단축의 수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일 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타격을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자료인지 그 자료 자체가 통계가 제대로 나온 건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대표성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품기간 단축과 총시장 규모, 총구매력의 변화는 없어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법을 왜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취지에서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쪽으로 지금 관점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누구의 돈으로 누가 장사를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을 넘어가는 형태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체 중에 흑자 업체와 적자 업체가 있어요. 그것은 매출액에 따른 게 아니에요. 매출액이 적어도 흑자 나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이 플랫폼 자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업체일수록 단축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을 자꾸 안에다 키팅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돌리려고 하는 업체일수록 사실은 적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제가 한 업체 한 업체를 전부 적자다, 흑자다를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제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못 해 드리는데 이것은 관점이 그쪽으로 가는 관점에서 법이 입법된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30일, 20일 주장하시고 거기에 수렴해 주시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조차 너무 길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서 싸우고 더 당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다시 숙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통계자료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통계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모든 총구매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돌아가서 피해가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납품 주기를 당겼을 때 중소기업체가 생존이 힘들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 이런 것은 있지요. 대규모유통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금 압박을…… 당기니까 갑자기 받아서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구매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사는 양의 변화가 없는데 어느 쪽에서든 사게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것 다른 형태로 다시 해석되는 부분이 제가 저어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게 생기게 됐고 이 법을 왜 관철시키려고 했는지 그것만 충분히 사례 깊게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준현 위원 부위원장님, 정회하는 동안 여야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민생법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 언제 됐냐면 티몬·위메프 사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지요. 당시에 그래서 강민국 전 간사께서도 법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야가 공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했고 그 공감한 배경하에서 계속 해 오다가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공정위가 제출한 결과보고서겠지만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강준현 위원 평균 잡아서 30일, 20일 이내에 지급하더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일, 20일 해도 무리가 없을 거다 이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강준현 위원 다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됐을 때 피해 보는 납품업체가 있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님이. 그 데이터가 진짜 있는지, 실존하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기사거든요. 기사인데 지금 그것을 부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더라든가, 내가 어느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공유를 해 주시든가.

○박대출 위원 잔뜩 했어, 잔뜩 했어.

○강준현 위원 아니, 위원님, 이것 같이하자고 했던 거예요, 2024년도부터.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납품업체고 입점업체인데 이게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다 합의를 봤었어요, 하기로. 그런데 이렇게 끌어오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서일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안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강준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정회하라고? 이것 또 여기 나오면, 여기서 또 각각의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공회전 돼 버린단 말이지요.

○이강일 위원 30일, 20일 하면 60% 이상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약해.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찾자는 거고……

○강준현 위원 그러니까.

○박성훈 위원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박대출 위원 60%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강준현 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취지에는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양당 간사님께서 두 분이 합의를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박대출 위원님하고 저랑 같이 들어가든가, 넷이 하든가 합의를 봐야지요.

○박대출 위원 아니, 합의 말고 이것 근거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돼요.

○박상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서일준 박상혁 간사님……

○박대출 위원 지금 이게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이것은 유통학회고 이것은 벤처창업학회고 다 다른 자료들이야.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서일준 박상혁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근거는 아까 111개 대형, 이 법에 해당되는 111개의 대형 유통사에 관련된 실지조사가 가장 직접적인 조사고요.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온라인플랫폼 관련된, 그러니까 온플법 관련된 기사와 학회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이 파이낸셜뉴스 관련된 이커머스가 여기도 보면, 이 기사에 보면 백화점은 다 15일

이내에, 대형 유통사나 대형 마트는 20일 이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기사에 따르더라도 지금 여기 해당되는 대규모 유통사에 공정위의 실지조사와 같은, 부합하는 기사 결과 아닙니까?

○박성훈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상혁 위원 그런데 작은 온라인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1인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강준현 위원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기다리고 있는 많은 납품업체의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아까 불만스러운 게 전문위원들이 만들어 두신 업계 얘기라고 하면서 관련 벤처기업협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수천만 명의, 수천만 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만 명의 납품업체 얘기는 왜 예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조그맣게 가내수공업해서 납품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관련 업체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라고 무슨 벤처기업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협회들 이렇게 할 거면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앞으로 여기다 전부 중소기업협회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서 얘기 들어야지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논의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처음 법안소위인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자는 차원에서 해 왔는데요. 위원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적정한 일자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논점들도 대부분 좀 전에 설명을 하면서 한 것처럼 다른 예외를 만들기보다는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 1년 정도를 여유를 두어서 그런 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저는 오늘 회의가 정말 당혹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적 이야기인데…… 저는 공정위에서도 준비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질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이 통계자료를,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까 공정위에서 설명을 했던, 공정위에서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확인은…… 지금 제가 그거를 다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 논의도 안 돼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사 하나씩 전부 다 갖고 나와 가지고 법안소위가 안 되지요. 심사자료는 왜 있습니까?

○한창민 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고 연구 결과를 했냐.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목적이 있는 연구 과제라는 것을. 그러면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이야기가 되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1년이 넘을 동안 엄청나게 고민스럽게 논의가 돼 왔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걸 결정

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김용만 위원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거든요.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이게 결국은 정산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납품업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 논리가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인터넷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백화점협회에서도 얘기를 그 당시에 했던 거고요.

결국은 정산기간이 단축되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를 직매입을 했다고 치면 그거를 60일, 그러니까 다 팔고 나서 판매수익금으로 우리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됐는데 30일로 단축이 되니까 우리가 운영자금을 그 안에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억을 직매입을 했다고 치면 원래는 60일 이후에 다 판 걸로 내면 됐던 거를 30일이 조금 지난 다음에 줘야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줘야 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있어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그 비용만큼을 금융비용을 발생을 시켜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갖고 오는 비용이 결국은 유통업체가 발생하는 그 금융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납품단가 인하 요구라든지 아니면 그 납품업체, 우리가 플랫폼으로 드리는 그 업체의 숫자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정산기간을 줄이면 안 된다, 이거 모르지 않지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못 보셨겠지만 통계가 있어요. 지금 1조 3000억 정도의 피해 규모가 한 4만 8000개 납품업체들에게 전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윤한홍 전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무위를 열어 가지고서는 해결해 달라는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열어 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유통업체에서 사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거 기사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지금 다시 그 4만 8000개의 납품업체들, 그 1조 3000억 원 때문에 나왔어 가지고서는 결국은 길바닥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건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게 우려스러워요. 아마 그걸 이강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들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공정위에 칠 수도 있어요, 왜 유통업체의 의견들만 합니까. 지금 유통업체의 의견들만 하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스러우니까 찾아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 담기지 않은 피해 납품업체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우리가 티몬·위메프 사태, 티메프 사태라는 게 그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납품업체한테 문제가

된다? 전혀요. 유통업체가 1억 직매입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금융 발생을 시킨다? 아니요. 본인들이 먼저 발생시킨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인 건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결정을 하나야 분명히 피해 납품업체들에게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저는 발언을 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하나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적이,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후반기는 처음이지요?

○박상혁 위원 법안심사소위를 열지를 않으셨습니까.

○박대출 위원 심사를 안 했었지요?

○박상혁 위원 열지를 않으셨어요.

○박대출 위원 회의를? 그러니까 심사는 안 이루어졌지요?

○박상혁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티메프……

○박대출 위원 이 법안에 대한 여야의 토론과 심사는 없었……

○박상혁 위원 아니, 티몬·위메프 사태 청문회를 하고 여야 의원님들이, 강민국 의원님이나 박성훈 의원님이 같이 발의를 하신 거지요. 저희 야당도……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 됐고, 지금 제가 사실 확인을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법안심사는 처음이지요?

○소위원장 서일준 제가 여기 소위 위원장 와서 오늘 처음입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법안심사를 안 하셨다니까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법안심사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김용만 위원 처음이에요, 처음.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법안심사를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안심사가 먼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어야 됐고.

두 번째는 이게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유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겨 놓을 거고요.

지금 문제는 말이지요. 무슨 보도자료 이렇게 기사 하나 가지고 갑자기 왜 무슨 갑툭튀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셨느냐 하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 해요.

지금 김용만 위원님은 이 사안이 새로 나온 사안이나고 새삼스러운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정위는 이것도, 실태도 이런 실태가 있고 이렇게 우려에서 오는 걱정을 하는 분석자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고 그에 대한 답변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근거로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납품업체의 피해를 더 가중시킨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그렇게 부작용이 큰 법안을 졸속 심사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 심사했다면서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법안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게 지금 이 티몬·위메프 사태예요. 피눈물 나는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피해를 다시 없도록 하자는 게 지금 우리 이 법안의 심사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정위 측도? 인정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자칫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가…… 법안이 잘못되고 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노파심 내지는 걱정, 내지 그런 걸 지금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닙니다. 충분히 짚어 보자면 위원님 질의에 아마 제가 달리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박대출 위원 이런 사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혹시 나게 했다, 그 법으로.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게 만일에 그런 사태가 나면 유통업체의 피해겠습니까? 납품업체, 이 많은 납품업체의 피해로 가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고 그 적자를 오히려 가중시켜 가지고 더 어려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해가 납품업체에 가중되는 일이 없을 거냐 이 부분을 확인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납품업체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부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납품대금 축소하고 언론 기사에 나온, 제가 아까 정확하게 사실은 연구·분석한 그 페이지를 보지 못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막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납품대금 기간을 줄였을 때 그게 발주량 감소라든가 이렇게 가정이나 조건을 하면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조금은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 자체를 보지는 않아서 예단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대금기일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충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이 있는 언론보도가 보니까 작년 10월 23일입니다. 10개월 전의 언론보도인데 이거는 지금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이게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1년 전에 나왔으면 충분히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법안심사 하는 저희들도 흔쾌히 '그렇냐'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본다는 등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보도가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다, 더 나아가서는 적자 보는 중소 유통업체가 구조조정이 된다면 대기업 유통업체가 오히려 혜택을 본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논리적 구조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충분히 이 법이 30일·20일이든 20일·10일이든 40·30일이든 40·20, 그 날짜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저희 위원들한테 확신에 차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중요하고 하루빨리 해야 될 이런 법안을 계속 머뭇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어쨌든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그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논문을 못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다음에 박성훈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여당 위원님들 또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의 취지가 납품업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추호도 다른 이견이 없고 저도 100% 공감하고 이 법안의 취지에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법을 소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만약에 이 법안이 실행되었을 때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저희 당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에 아까 여러 가지 매출액 구간별로 지금 현재 사업자들을 이 리스트들을 쭉 주셨는데 여기 보면 1000억 미만은 53개인데 지금 좀 구체적인 업체들은 다는 나열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통업자들 중에 이번에 직매입에 대해서 만약에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기일이 줄어들게 되면 각 업체별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 뒤에 지금 구체적인 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금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금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증자를 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켈리라든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대상 업체들이 이번에 만약에 60일에서 30일로 직매입과 관련된 대금 지급기한이 줄어들게 되면……

이 중에는 적자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1000억 미만 53개 중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자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은 이자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업체 자체가 처음에 창업해 가지고 적정 규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과 어떤 그런 궤도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되게 힘든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되면 연간 상품 매입에 들어갔던 금액, 현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위에서 조금만 스터디해

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예기치 않게 중소 온라인 업체들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도산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의 구조조정 법안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시장이나 대규모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받도록 하자는 취지지. 그래서 이 법 시행의 영향으로 예기치 않게 어떤 유통업체들이 만약에 도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취지에서……

(서일준 소위원장, 박상혁 위원과 사회교대)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총 시장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하위 업체가 망하면 고객들이 쿠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총 소비 규모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 잘 아시지요? 그게 총 소비자 후생을 그냥 유지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금기일의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지금 한창 성장하고 적자지만 거래 규모를 늘려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대금의 지급기일이 단축되는 걸로 인한 운전자본의 부담 때문에 회사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영업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회사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몇몇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금흐름표 같은 걸 분석을 해서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게 되면 각각의 업체들이 연간 얼마 정도의 현금을 더 부담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업체들이 지금 이자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이 많다 이러면 문제없겠지요. 지금도 차입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객들이 쿠팡이나 이런 데 가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 법의 시행으로 예기치 않은 유탄을 맞아서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그 회사에 납품하던 납품업체들도 내가 본래 바랐던 것은 대금을 좀 빨리 받는 건데 갑자기 물건 팔 데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쿠팡에 가서 팔면 되지, 쿠팡이 협력업체들한테 얼마나 갑질하는지 공정위 잘 아시지요? 그런 회사들에 가라고 떠미는 건데 그게 과연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관점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신문 기사가 아니고 실제로 유통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각의 업체들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게 1년 유예 준다고 해서 1년 안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량을 좀 보고 역량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적정 균형점을 찾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야당 위원들이 말씀드리려는 거니까……

공정위에서 제 말씀 이해를 좀 하셨지요? 이해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의 부작용이 혹시라도 기존에 성장하던 유통업체들을 되게 위축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회사에 납품하던 납품업체들에게 2차적인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소위원장대리 박상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박성훈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이 표가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게 작성되어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유통 브랜드순으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000억 미만이 53개,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브랜드별이기 때문에 예컨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 구간에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1조하고 5조 구간 사이에 롯데마트가 있고 1000억 미만에 롯데ON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계열사고요.

○최은석 위원 그건 제가 다 알고.

그래서 그런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걸 빼면……

○최은석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에 혹시라도 이 법의 시행으로 사업 자체가 영향을 받는 그런 유통업자들은 없는가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런 부분은 말씀 취지처럼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팩트 말씀으로는 이게 실제로 1000억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브랜드 수로는 24개고 업체 수로는 8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수……

○최은석 위원 그래서 작더라도 그 영향을,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혹시 전체 유통업체 자체에 다른 영향을 미쳐서 납품업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박상혁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한창민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이 사안을 공정위가 얼마나 안이하게 보는지 오늘 법안소위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공정위 부처 연구용역비 얼마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박성훈 위원 한 해의 부처 연구용역비를 올해 얼마를 책정받아서 얼마를 쓰셨습니까?

작년 10월에 정산주기 단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고 서울대 합동연구팀 유병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고 하면 제가 만일 공정위 부위원장님 같으면 연구용역비를 활용해서 ‘이렇지 않다, 우리가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지금 법사소위 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기간 대충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공정위 직원분들, 예상 QnA 안 만듭니까?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 명쾌하게 ‘이

렇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짚어 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공정위 부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더 질문을 하고 더 의혹을 제기하고 더 부작용을 거론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박상혁 위원, 서일준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여야 위원님들이 다 정산주기 단축해야 된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런 우려나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만 나왔어도 아마 오전에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저희가 듣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작용, '중소 납품업체들이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과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일준 박상혁 간사님.

○박상혁 위원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를 자주 열기로 했고 민생 관련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정위가 사전에 여야 위원님들을 찾아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보좌진들 실무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이제 다른 풍토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하 모든 관계부처가 그런 풍토로 진행이 되어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심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나 서일준 간사님이나 여야 위원님들 다 공히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풍을 다시 잡아 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훈 위원 마무리를 못해서 10초만 주시면……

○박상혁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끝나신 줄 알았어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님,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중소 납품사 정산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30%가 퇴출될 위기, 그다음에 연간 19조 원 규모의 소비자후생 감소 이런 연구 분석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분석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참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아마 민생 법안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심도 있게,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토의를 해 주셨는데요.

핵심 쟁점은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에 피해가 간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에서 확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납품업체에 이익입니다. 그리고 전체 소비자한테도 전혀 불리한 게 아니고 건전한 시장 질서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확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납품대금 단축은 수급업자들, 납품업자들의 숙원입니다. 어느 납품업체든 다 이것을 기대하고 또 원하고요. 그리고 이게 납품업체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난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유통업체들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도 있고 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언론 보도하고는 전혀 안 맞다라는 것을 충분히……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1년 동안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늘 이 법은……

○박대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하나만 하고 역질문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서일준 예, 말씀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을 주세요.

이 법 시행으로, 개정안대로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이 단순한 단축으로 인해서 도산하지 않을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납품업체의 피해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해 주시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는 대금 단축으로 인해서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것은, 그런 실질적인 관계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을 거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마무리하시지요.

○김용만 위원 저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아니, 마무리합니다. 오랫동안……

○김용만 위원 아니, 이것은 확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서일준 예, 고생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부위원장님, 발언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신중하라는 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처음에 이 법안을 만들게 됐을 때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때 얘기한 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이게 결국은 대등한 위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갑과 을의 위치였던 거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긴 정산주기로 하여금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크게 보고 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납품업체한테 도움이 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도움이 됩니다.

○김용만 위원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납품업체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는 뭐냐 하면 유통업체가 감내해야 되는 피해가 있어요. 맞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김용만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유통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유통업체가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운용자금이든 직접운용비 등이 더 발생하게 될 것 같으니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이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맞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사실상 유통업체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는 납품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정산주기가 빨라짐으로 하여금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금융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한테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균등한, 더 건강한 자유경쟁시장을 만들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서일준 마무리하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한마디……

○소위원장 서일준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제가 유통업체에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신 것은……

○김용만 위원 지금 아무도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더 도산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용만 위원 도산될 수도 있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게 이유가 돼서 도산되는 양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박대출 위원 그걸로 해서 도산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우리가.

○소위원장 서일준 한창민 위원님, 짧게……

○박대출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지, 이것은.

○한창민 위원 이것 반복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답을 못 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김용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걸 분명히 납품업체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납품업체를 위한다고 하는데 납품업체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일부 부담은 유통업체에서 져야 된다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다만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거나 도산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용 전가를 납품업체한테 한다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불공정거래잖아요. 유통업체의 비용을 납품업체한테 전가시키는 것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은 질문은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납품업체가 도산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박대출 위원 유통업체가 납품대금을 못 받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한창민 위원 납품업체가 도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도산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줄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업체한테도 피해가 간다 이 논리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위원장 서일준 잠시 논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질문·답변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저희들이 기일만, 다양한 안이 있는데 그 안만 논의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이런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유예기간 1년 동안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최종 마무리 말씀 좀 한번 해 주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요. 저희가 이 법 시행을 하면서 유효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시장 상황도 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하다면 보완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충·보완 장치나…… 어쨌든 저희가 애당초 설정했던 단축기간 자체가 충분히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기간을, 대금 지급기한이 의원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박대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말을 바꿔 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안 돼.

○박상혁 위원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박대출 위원 유통업체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납품업체가 도산하는 이유 없을 거다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업체가 도산을 하면 납품업체가 판매대금을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질문을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걸로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다시 납품업체 도산을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확인을 드린 겁니다.

○**박상혁 위원** 유통업체든 납품업체든 마찬가지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박대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를 질문하셨고 저는 그렇게 들은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겁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그러면 유통업체 도산하는 일은 없을 거다 확신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대금 기간 단축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것은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나중에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밖으로 안 들려요, 나는.

○**소위원장 서일준** 박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저는 이렇게 함부로 성급하게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의결을 하신다면 저는 반대의견으로 해 주세요.

○**한창민 위원** 위원님, 어떤 제도를 변화하는 데 거기에 절대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답변을 달라고 해야지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절대 는 없는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안을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적자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실태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32개인지 156개인지 165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50개다, 30개다, 20개다, 10개다, 1개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예를 들어서 20%, 30%가 중소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것은 법안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법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실태를 압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에서? 왜 성급하게 하세요, 그 실태도 모르면서?

○**소위원장 서일준**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특약매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20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일? 특약매입은 20일. 특약매입은 지금 현재 40일인데 20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직매입은……

○**박대출 위원** 직매입은 축소하는 것 여기서 결론 내는 것은 저는 반대해요. 지금 기업의 실태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소위가 이 소위를 열어서 1년 동안 왜 이 법안을 심의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칫 이런 기업이 만일에 문제가 한두 개라도 나왔다, 위메프 사태가 나왔다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소위원장 서일준** 공정위에서…… 문제없는 거지요?

○**박대출 위원** 안 나와야겠지. 안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박상혁 위원**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위메프 사태가 나타난 것은 돈을 오용하거나 이것의 정반대의 케이스에서 하거나 정산을 해야 되는 돈을 판 데 쓰고 이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운영 자금과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엉뚱한 데 투자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서요. 오히려 그런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부위원장

님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유통업체의 경영실태의 현주소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래서 유통업체의 경영 부분이 납품기한을 단축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사실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정위에서 납품기한을 단축해서 생기는 경영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더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적자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대충도 모릅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아니, 적자는 날 수가 있는데 적자 기업이 납품기한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의 이유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서 추가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박대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적자와 흑자의 경계선에 있는 기업이라면 이게 굉장히 경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서 그게 자칫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태가 나왔을 때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소위원장 서일준 박 위원님, 방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납품기한을 단축해 가지고는 안 생길 거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납품기한 단축을 해 가지고 현재 경계선에 있거나 적자 기업이 더 경영 악화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체적으로 이 기간을 설정한 것은 충분히 업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직매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안 또 공정위 안이 7일부터 40일까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임미에 의원님은 7일 또 오세희 의원님은 40일 그다음에 거의 30일 또 강민국 의원 40일, 25일, 다양하게 있는데 이 날짜는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상혁 위원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부안에서는 현재의 유통업체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 30일 정도를 제안해 주셨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혹시나 걱정하시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35일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줄면 걱정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대형 유통과 관련된 대부분이 10일~20일 사이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는 점진적인 안으로 한 35일 정도 제안드려도 어떤지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대출 위원 60을 35로 바꾼다고? 절반이나? 60을 35로 바꾼다고요?

○소위원장 서일준 35요.

○박대출 위원 절반 수준이나? 아직 공부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일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박대출 위원 답변을 못 하잖아요.

○박상혁 위원 그리고 현재의 관행들이 다 10일~30일 내에, 심지어 30일 내가 많습니
다.

○박대출 위원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상혁 위원 아니, 저희는 대규모 유통업체만 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하여튼 공정위에서 1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 존경하
는 박대출 위원님 지금 엄청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를 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챙겨보고 필요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보완 대책이라고 준 게 보완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35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 있는 업
체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저
는 조금 경과기간을 뒤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시행할 때는 45일 그다음에 큰 문제 없
으면 30일 이렇게 저는 부칙의 경과기간 이런 것도 아이디어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5일로 줄이고 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 또 그다음 1년 차에
30일로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서일준 일단 35일로 하시고, 하여튼 한 1년 동안……

○박대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이렇게 서두르지? 난 이해가 안 가네.

○한창민 위원 저는 사실은……

○박대출 위원 아니, 법안 하다 말다 60일을 절반으로……

○한창민 위원 위원님, 저희들도 얘기 좀 할게요.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세요.

○한창민 위원 사실 1년 유예기간도 주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사실은 그 유통업체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납품업체 허리 졸라매면서
그것 유지했던 것 아니에요? 악덕기업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는
정도 수준에도 업체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 정도 수준이고 이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다
고 하면 결국은 납품업체 비틀어 가지고 운영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
로. 우리 양심을 갖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은 납품업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
로 고민을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 이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다 같이 공생하자는 그런 뜻에서 걱
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부위원장께서는 정말 면밀히 1년 유예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의 걱

정이 기우에 불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20쪽입니다.

20쪽은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납품업자 등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한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희 의원안의 경우 특약매입 등에 있어서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을 하면서 영세 납품업자 등에게는 15일로 지급기한을 더 짧게 두고 있고 직매입의 경우에도 40일로 개정하시면서 영세 납품업자 등에게는 30일로 더 짧게 지급기한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안도 개정안은 특약매입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40일이지만 중소기업자에게는 20일로 지급기한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안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짧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약매입의 경우 임미애 의원님·이만희 의원님은 5일로, 임이자 의원님은 10일로 지급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임미애 의원·이만희 의원 5일, 임이자 의원은 10일로 지급기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품업자 등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한을 차등하여 적용할 경우 영세 납품업자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기한을 차등하여 적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지급기한이 긴 대기업 등과의 거래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납품업체 선정 기준은 소비자 선호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대기업 위주의 상품 납품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감액, 반품에 관한 특칙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기한까지 일반 상품 등과 달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납품업자 규모나 신선 농·수·축산물같이 품목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의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에도 그 밑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함께, 이렇게 단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소기업의 기준이라는 게 업종별로 또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과 그리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문제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현재도 상품대금의 감액이나 또 반품하는 특칙을 2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특칙을 통해서 충분히 유통기한이 짧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 하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러 가지 차등을 두는 방법도 고민이 되기는 합니만 정부 측 안대로 일단 그 부분은 신중하게 넘어가는 게……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금 기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이 앞부분이 지금 정리가 됐나요, 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서일준 35일, 20일, 35일, 20일……

○박성훈 위원 이거를 그렇게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대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정위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를 못한 상황이고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35일이라고 하는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왜 35일인지에 대한 공정위의 정확한 답변이나 근거가 없는 이상은 그냥 35일이라고 하면 ‘그냥 30일 하세요’ 아니면 ‘38일 하세요’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뒷부분을 논의하는 의미가 사실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뒷부분을 짚어 가 봐야 결국은 원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공정위 직원들 자료 준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안소위를 들어와서, 전반기 채경위·기재위에 있을 때와 지금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지금 앞에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뒤에 차등 적용 여부는 너무 부담이 되겠다 해 가지고 신중검토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납품업체를 생각한다면 차등 지급도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통업체에서 너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검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나 박성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혀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아직 안 계시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다른 부분……

○소위원장 서일준 정리하실 때 할까요?

○박상혁 위원 예, 나름 좀 있으니까…… 뒤에 또 있습니다. 아직 안 계시는데……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오늘 이거 어쨌든 큰 방향은 내렸지만 최종 결론 내기 전에 공정위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내일이라도 임시로 다시 열어서 하시든지 그건 어떠실까요? 지금 보니까 너무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고……

○박상혁 위원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시지요. 차등 적용 문제는 논점이 없는 것 같고……

○소위원장 서일준 차등 적용은 논점이 없고요.

자,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30쪽 보시겠습니다.

직매입 거래의 예외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일정 기간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급기한은 의원님안마다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10일에서 30일까지 다양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예외 규정을 두어 다수의 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월 1회 정산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지급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적용의 범위가 월 다회 정산 방식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월 1회의 정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 매입마감일부터의 적정 지급기한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체 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 비중이 53.8%로 가장 높고 월 1회 정산 시 평균 대금 지급일은 33.6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업계 관행상 직매입 거래도 월 1회 정산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예외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처럼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특약매입과 같이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안처럼 되는 건가요, 조문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월 1회 정산이고 월 매입마감일 기준으로 20일 이렇게……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승원 의원안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일부’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월 마감일로부터 20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김용만 의원님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김용만 의원님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김용만 의원님안, 예.

○전문위원 구현우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박상혁 위원 예.

○소위원장 서일준 다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 앞에 전체적으로 직매입에 대해서 35일로 줄인다고 하면 이건 지금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35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 달 전체를 평균해서 보면 15일 정도—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그 뒤에 20일을 붙이는 거니까—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앞에 있는 35일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니까 이게 35일 플러스 매월 1일로 잡으면 55일이 되는 거고 15일로 잡으면 35일이 되고……

○최은석 위원 예, 35일이 되고 마지막 30일로 잡으면 20일이 되는 거라 평균적으로 보면 35일하고 같은……

○소위원장 서일준 35일에서 55일 정도까지 되는 거지요, 사실상.

○최은석 위원 예, 월 말에 가면…… 어쨌든 이거는 저는 월 1회 마감 방식 하는 경우에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두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직매입에 대해서 35일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공정위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35쪽입니다.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입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대금 지급기한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급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납품업체의 압류·가압류·연락두절 등의 사유 등에는 지급기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10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 법률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되 예외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범위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천재지변, 납품업자 등의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의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정당한 사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

○최은석 위원 수정의견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40쪽입니다.

지연이자 상한 상향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연리 15.5%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연이자의 상한을 40에서 5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자연이자율이 15.5%로 법률상 상한이 4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상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다소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42쪽입니다.

과태료 신설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대금 지급기한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자료제출 등의 협조의무 위반 등 절차적·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지급기한 위반은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를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과태료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44쪽입니다.

부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행일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6개월,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조항은, 강민국 의원안과 임이자 의원안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민국 의원안의 경우 직매입 거래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어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50일 이내, 1년 이상은 40일 이내 이런 식으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입니다.

공포 후 시행까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에게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례조항입니다.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 사항입니다.

시행일만 둘 경우 어떤 단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인지 명확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현행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특약매입 등 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부터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부칙에서 제2조에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둔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시행일에 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례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적용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은석 위원 저는 특례, 적용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지만 시행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정위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결과,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끊어서 가는…… 45일, 30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게 40일이면 50일, 40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시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 그게 특례니까 특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전문위원님, 강민국 의원 개정안 특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지금 특례 같은 경우는, 현재 강민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행에서 60일 이내인데 개정안은 4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시면서 시행일을 나누어서 시행일부터 1년 미만까지는 50일 이내로 한 번 단계적으로 줄이고요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4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지급기한 단축을 적용하는 특례를……

○소위원장 서일준 50일, 40일이라는 거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니까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50일이고 2년 차부터는 40일이고?

○전문위원 구현우 예, 원래 본인이 개정하려고 하셨던 40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35일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행 1년 차는 기간을 조금 더 주고 2년 차는 35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는데……

○박상혁 위원 그것은 좀……

한창민 위원님 말씀……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지금 걱정과 우려, 단축기간 때문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외적인 특례가 길어지면 사실 그동안의 어려움, 이 긴박함 때문에 논의했던 내용들의 실효성은 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진행을 하고 아까 우려했던 부분을 공정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철저하게 만들어 내도록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소위원장 서일준 그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도 염려하신 부분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급한 법안을 왜 지금까지 심사도 한 번도 안 했느냐…… 지금 저희가 후반기 원 구성되고 박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첫 법안소위에 올린 건데, 저희들은 중요하대라고 봤는데 전반기 때는 한 번도 심사 안 했다는 게, 지금 급하고 중요하대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박대출 위원님은.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정위 부위원장님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1년의 적용 유예기간 동안에 시행 준비를 하면서 시정과 소통을 하고 또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가 필요하면 국회에 보고드리고 대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완 장치로는 위원님들께서 직매입하고 정당한 사유 포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감소시키는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은석 위원님, 한 말씀……

괜찮습니까, 공정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최은석 위원 그런데 공정위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내용이나 보완책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보면 이게 업체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하루 정도만 하면 공정위에서 이 회사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새롭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운전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명확히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걱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들, 직매입 35일 이렇게 결정해 주셨는데요. 직매입 35일이면 지금 현재 35일 이내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거의 70% 넘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렇지요, 70%는 좋은데 뒤에 있는 20~30% 업체들 또 그중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는 게 혹시나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60~70%는 괜찮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 때 되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구체적인 회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고 독자적인 인터넷 유통망 중에, 인터넷 쇼핑몰 중에 소비자들, 일방적인 대기업, 쿠팡 같은 이런 데가 아니고 정말 본인이 여기에서만 살 수 있다 이런 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회사에 대해서 다 검토하지 않고 대부분은 괜찮을 것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의사결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최은석 위원님이나 박성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법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모두가 생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쪽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일단 직매입 35일 규정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공정위가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확실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오늘 소위에서는 대부분 직매입 35일 규정은 거의 동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 법은 통과를 시키되, 다만 최은석 위원님이나 박성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정위의 자료라든지 실제로 피해를 볼 기업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절충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성훈 위원님, 좋습니까?

○**박성훈 위원** 자료를, 기존에 의원님들이 내신 것을 보면 35일은 없었잖아요?

○**소위원장 서일준** 없었지요.

○**박성훈 위원** 40일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왜 40일은 아니고 35일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 30일도 많이 있고 또 20일도 있고 한데 절충을 한 거지요.

○**박상혁 위원** 그런데 아마 기일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지금까지 60일이었냐 이것도 사실은 과거의 관행 또는 입법정책적 이야기로…… 제가 이 연혁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까만 이게 아마 더 길었겠지요. 예전에 유통업이 이런 때가 있었던 시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 어음 거래도 아니고 말이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강일 위원님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시고 또 실제로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에 찾아오신 많은 납품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이 기간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저희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날수로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아까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체회의 의결 전에 그런 부분들은 공정위에 좀 더 설명을 드리시는 게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훈 위원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소 납품업체가 오히려 정산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 그리고 이런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해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다음 번 전체회의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비책을 통해서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중소 납품업체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자료를 저희에게 만들어 주시면 저도 오늘 말씀하신 35일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최은석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최은석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만 잘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우리……

○이강일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일준 마무리하시지요.

○이강일 위원 제가 사실은 내용을, 이런 말씀 드리지만 내용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는 위원이 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산기일이라는 게 만약에 30일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거의 다 월 마감 이후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최장 60일 이후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1일 날 납품해도 월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 마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마감을 해서 30일 결제냐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소위원장 서일준 아니, 그것은 상품수령일로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예, 맞습니다. 상품수령일……

○소위원장 서일준 그것은 상품수령일로부터……

○이강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 확실하면 그것은 됐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저는 대체적으로 전반기 때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대충 서로 받아들이는 기일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정무적 판단을 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밖에서 하도 설득을 많이 당해 가지고 저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본회의 때 꼭 이것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맨 처음에 이것에 대한 입법취지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아까 다른 어떤 기사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업도 했던 사람으로서 정산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납품을 하는 업체한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은 거의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단축 기간은 합리적으로 당기되,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지 적자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걸로 계속 말씀을 드려 왔거든요.

다시 한번 본회의 때까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상태에서 저도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부위원장님, 확인만 다시……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매입인 경우도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인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로부터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걱정하시는……

○소위원장 서일준 다만 박상혁 위원님 말씀처럼 직매입 같은 경우에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인데 월 마감일 경우에는 예외가 20일 더 추가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약매입하고 같이……

○소위원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구현우 위원장님, 아까 특례조항은 어떻게 하시는 걸로 결정을……

○소위원장 서일준 특례조항은 안 하는 걸로……

○전문위원 구현우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말 심도 있게, 법안소위 첫 번째 회의를 너무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모든 법안은……

오늘 공정위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석 위원 다만 의사록에는 없지만 전체회의 전에 공정위에서 꼭 정확한 자료로 해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오늘……

○소위원장 서일준 당연하지요.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전체회의 전에 최은석 위원님이나 꼭 설명을 정확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희 둘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소위원장 서일준 모래 전체회의 회의하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다 해명을 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한삼석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류승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익위에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유형 중 하나인 송부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피신고자에 대해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 법안 공통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법원에서 권익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은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의 처리 유형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으로의 이첩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이첩, 송부, 종결로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고 송부와 종결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사건의 처리 유형 중 송부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반영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외에 표에서 보듯이 개정안 내용에는 없지만 조사기관의 결과 통보 대상 사건에 송부된 사건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건 처리의 한 유형인 종결 관련된 내용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과 예측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첫 번째 쟁점으로 정리해 주신 송부 사안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동의합니다. 이것은 다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그다음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예전에 처음 시행할 때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것들을 2021년, 2022년 다 법률로 상향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첩만 법률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이첩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과를 통보받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까지 같이 고쳐야 송부한 내용까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법들은,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종결 기준도 다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은 시행령에 종결 사항이 돼 있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것도 법률로 상향하는 데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첫 번째 것 하는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첫 번째 사항입니다.

○**박상혁 위원** 5페이지.

○**이강일 위원** 별다른 내용 없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안……

○**박성훈 위원** 예,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적으로 송부하고 종결 처리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현재 조문에는 없는데 그것도 조문화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소위원장 서일준** 그런 것이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때.

○**전문위원 류승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피신고자에 대해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검사무처장 한삼석** 검토 내용에 동의하고요. 이 규정은 똑같은 내용으로 2021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에 규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피신고자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요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탁금지법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되면 피신고자에 대한 방어권이나 또 신고사건 조사의 객관성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류승우**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권익위에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징수 방식을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법원에서 권익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개의 김현정 의원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모두 권익위로 일원화하고 있는 반면에 이해식 의원안은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에 한하여 권익위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권익위에 부여함으로써 소속기관장의 통보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보듯이 소속기관장의 통보 절차를 유지하는 한 개정안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의 미통보·지연·누락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건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일을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 변경 여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검사무처장 한삼석**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권익위로 일원화한다고 하는 그 근본 취지에는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그러니까 조사기관이 지금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기관의 감독기관 그다음에 수사기관, 감사원이 조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모든 조사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검토 내용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했을 때 불응하는, 그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그다음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다 권익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하되 신고자 보호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해서 그렇게 과태료 부과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만 아까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을 뒀었는데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개정안에는 유예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게 되면 시행령도 정비를 해야 되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서 유예기간 6개월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2개로 갈려지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되 권익위 권한 내에서…… 보호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것 만든 법원에 다 맡기기가 좀 곤란 하더라는 얘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이강일 위원 업무 효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또 법원에 그 사람들이 다시 제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의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것 가능한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과태료 재판을 법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른 위원님.

○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13쪽의 표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현정 의원안과 이해식 의원안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이해식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이해식 의원안으로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은 법원에서 현행대로 하고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만 권익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식 의원님 안으로 동의하신다는 취지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이해식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그 부분만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 아까 청탁금지법 김현정 의원님 안에도

과태료 부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자 보호 관련된 사항만 권익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법 위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두 안을 조정한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한창민 위원** 이해식 의원안에는 청탁금지법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아예 없으니까요.

○**한창민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청탁금지법에도 신고자 보호 규정에 한해서는 권익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훈 위원** 결국 청탁금지법이든 이해충돌 방지법이든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은 부과 주체를 법원에서 권익위로 바꾸는 것으로 정부안을 이해하면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박성훈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권익위의 인력이나 직제가 변경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지금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패신고나 공익신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력 증원이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따로 특히 인력 보강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있는 인력들을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직제를 변경을 하거나 추가 예산 부담 없이도 현재의 조직과 인력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 설명 또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 마친 겁니까?

○**전문위원 류승우** 예.

○**소위원장 서일준** 보통 이런 권한 더 달라고 하는데 법안에 있는데도 정부안에서 과태료 부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일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의 확대나 권한을 늘리려고 한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 관할 법원마다 과태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들쭉날쭉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과태료…… 저희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의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는

데 현실적으로 현재 조사 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의 결과를 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나뉘었다가 나중에 다시……

○소위원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류승우 위원장님, 아까 추가로 송부 규정 외에 종결 규정 신설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자 보호 규정만 권익위로 이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문구를 정리한 게 있는데 확인 한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일준 확인하고 한번 봅시다.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시행 6개월 경과 규정 등을 다 확인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서일준 들어가는 거지요.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전문위원 류승우 그러면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류승우 일단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김현정 의원안에 종결 규정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이게 각 조에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분산하기보다는 새롭게 조를 신설해서 한 조에 몰아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13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3조의3에 권익위로 신고된 내용들은 어떤 처리를 거치나 해 가지고 이첩 그다음에 송부 그다음에 종결할 수 있는 기준들을 명시했고요. 여기에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까지를 같은 13조의3에 한번에 다 규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기존 김현정 의원이 내셨던 해당 조항들은 삭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현정 의원안 7조의 7항, 9조의 7항 그다음에 14조의 2항 그다음에 14조의 3항 이것들이 삭제되면서 13조의3 새로 신설되는 조문으로 썩 다 한번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조정해 봤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안 7조의 7항에 있는 것들을 13조의3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다 한번에 몰았다는 취지이신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맞습니다. 지금 송부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안들이 7조의 7항, 9조의 7항 그다음에 14조의 3항 등등으로 분산돼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 종결 규정까지 신설하게 되면서 그렇다 보면 조문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면이 있어 가지고 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문구를 좀 다듬어 봤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8페이지 보시면 23조(과태료 부과) 항목에서 현행 7항을 나눠 가지고 신고자 보호 규정만 덜어낸 ‘제8항 1항 2호 및 2항 2호에 따른 과태료는 권익위가 부과한다’ 이거를 신설하고 나머지 항은 기존대로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서 부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일 같은 경우 공포 후 즉시에서 6개월로 변경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법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및 의정기록과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준현 김용만 박대출 박상혁 박성훈 서일준 이강일 전현희 최은석 한민수
한창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부패방지국장 김기선